부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출자 : 2007년 10월 9일 부천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7년 10월 10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3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2007. 10. 17) 상정

○ 제13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2007. 10. 17) 원안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예산법무과장 김 창 열)

가. 제안이유

○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시 예고 대상과 예고 예외로 구분하여 규정하였던 것을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항만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이 외의 사항은 의무적으로 입법예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의사를 수렴 반영하여 시민의 입법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입법내용이 주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및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등은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1항)

○ 입법안을 마련한 주관과장은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다시 하도록 규정함.
(안 제2조제2항)

○ 법무업무담당과장은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한 자치법규안의 심사요청을 받은 경우에 입법예고를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주관과장에게 입법예고를 권고하거나 직접 입법예고를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조제3항)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 입법예고가 절차를 생략 가능한 기준은?	○ 주민들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의 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와 입법을 긴급히 요하는 사무,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요하는 사무가 대상이 됨.
○ 입법예고 명시 과련 상위법은?	○ 행정절차법이 해당됨.
○ 신·구조문 대비표 개정안 제2조 입법예고 대상 규정과 관련하여 단순한 오자의 경우 수정하여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제2조 제1항 ‘자치법규을’를 ‘자치법규를’로 수정토록 하겠음.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　　음

나. 반대토론

○ 없　　음

5. 심사결과

○ 원안의결

6. 소수의견

○ 없　　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부천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150호
의 결 년월일	2007. 10. 26 (제139회)

제출년월일 : 2007. 10. 9.

제 출 자 : 부 천 시 장

□ 제안이유

○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시 예고 대상과 예고 예외로 구분하여 규정하였던 것을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항만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이 외의 사항은 의무적으로 입법예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의사를 수렴 반영하여 시민의 입법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입법내용이 주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및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등은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1항)

나. 입법안을 마련한 주관과장은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부분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다시 하도록 규정함.(안 제2조제2항)

다. 법무업무담당과장은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한 자치법규안의 심사요청을 받은 경우에 입법예고를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주관과장에게 입법예고를 권고하거나 직접 입법예고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3항)

부천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부천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를 “부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행정절차법”을 “「행정절차법」”으로 하고, “법제업무운영규정(대통령령)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제업무 운영 규정」제20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입법예고 대상) ① 자치법규을 입법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입법안을 마련한 업무주관부서 실·과·소장(이하 ″주관과장″ 이라 한다)은 이를 시장 명의로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입법내용이 주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2.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3.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4. 예고를 하는 것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5. 입법내용의 성질 그 밖의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주관과장은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③ 법무업무담당과장은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한 자치법규안의 심사를 요청받은 경우에 입법예고를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주관과장에게 입법예고를 권고하거나 직접 입법예고를 할 수 있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4조제2항 중 “공고외”를 “공고 외”로 하고, “컴퓨터통신”을 “인터넷”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내용에 관하여”를 “내용과”로 한다.

제5조 중 “20일이상”을 “20일 이상”으로 하고, “10일이상 20일미만”을 “10일 이상 20일 미만”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기타 의견제출에 관하여 필요한”을 “그 밖에 의견제출에 필요한”으로 하고,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8조 중 “비용에 관하여는 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3조의3 규정”을 “비용은 「부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제3조의3”으로 한다.

제9조 중 “의견제출기간안”을 “의견제출기간 안”으로 한다.

제10조 중 “진행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38조 및 제39조를”을 “진행은 「행정절차법」제38조부터 제39조의2까지의 규정을”로 한다.

제11조 중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을 “시행에 필요한”으로 한다.

별표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부천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	**부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운영규정(대통령령)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례·규칙(이하 "자치법규"라 한다)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이하 "입법"이라 한다)함에 앞서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미리 예고하여 주민의사를 수렴·반영함으로써 주민의 자치입법에 대한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자치법규운용의 효율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행정절차법」------「법제업무 운영 규정」 제20조제2항에 따라----------..
제2조(입법예고대상) ①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자치법규로서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업무 주관실·과·사업소장(이하 "주관과장"이라 한다)은 이를 시장 명의로 입법예고하여야 한다. 1. 공중위생 2. 환경보전 3. 농지 기타 토지제도	제2조(입법예고 대상) ① 자치법규을 입법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입법안을 마련한 업무주관부서 실·과·소장(이하 "주관과장" 이라 한다)은 이를 시장 명의로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입법내용이 주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현 행	개 정 안
4. 국토계획 및 도시계획 5. 건축 6. 도로교통 7. 시험에 관한 사항 8. 정보화관련 제도 9. 기타 주민의 권리·의무 또는 다수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분야의 사항 ②주관과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법예고대상 자치법규외의 조례안 또는 규칙안 (이하 "자치법규안"이라 한다)에 대하여도 입법예고할 수 있다. ③법무업무담당과장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예고를 하지 아니한 자치법규안의 심사를 요청받은 경우에 입법예고함이 적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주관과장에게 입법예고를 권고할 수 있다. ④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례를 예시하면 별표와 같다.	2.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3.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4. 예고를 하는 것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5. 입법내용의 성질 그 밖의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주관과장은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③ 법무업무담당과장은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한 자치법규안의 심사를 요청받은 경우에 입법예고를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주관과장에게 입법예고를 권고하거나 직접 입법예고를 할 수 있다.
제3조(입법예고의예외) 입법예고대상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당해 자치법규의 입법이 긴급을	〈삭 제〉

현 행	개 정 안
요하는 경우 2. 입법내용의 성질 또는 기타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상위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4. 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제4조(입법예고방법) ① (생 략)	제4조(입법예고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주관과장은 자치법규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 또는 전문을 부천시보에 의한 공고외에도 신문·방송·컴퓨터통신 등을 활용하여 주민에게 널리 알리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고 외----------인터넷----------.
③주관과장은 당해 입법예고 내용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에 예고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③ ------해당----------내용과----------.
제5조(입법예고기간) 입법예고기간은 20일이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법무업무담당과장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10일이상 20일미만으로 단축할 수 있다.	제5조(입법예고기간) ----------20일 이상----------10일 이상 20일 미만----------.
제7조(의견제출) ① (생 략)	제7조(의견제출) ① (현행과 같음)
②주관과장은 의견접수처·의견	② ----------

현 행	개 정 안
제출기간 기타 의견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당해 자치법규안을 입법예고할 때에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그 밖에 의견제출에 필요한----------해당----------.
제8조(비용부담) 주민이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할 때에 자료의 복사에 필요한 비용에 관하여는 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3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비용부담) ----------비용은 「부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3조의3---------.
제9조(제출의견의 처리) 주관과장은 입법예고결과 의견제출기간안에 제출된 의견을 내용별로 분석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후 자치법규안에 적극 반영하고 그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제출의견의 처리) --------의견제출기간 안----------.
제10조(공청회) ① (생 략) ②공청회의 개최와 진행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38조 및 제39조를 준용한다.	제10조(공청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진행은 「행정절차법」 제38조부터 제39조의2까지의 규정을----.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시행규칙) ---------시행에 필요한---------.